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군수 등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하고, 산림소유자가 경영목적과 현지 상황에 부합하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서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등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7조)

- 1)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개선

* (현행) 시·도지사 승인 → (개정) 시·도지사 의견 반영

나.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할 사업내용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2항)

- 1) 산림경영계획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을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조림, 숲가꾸기, 벌채·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포함되도록 작성 →
(개정)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 이상을 반영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명시(안 제68조제17호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예시에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10. ~ 8. 1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얻어야”를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를 “경영계획구현지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로 한다.

제68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17.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u>승인을 얻어야</u>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 ----- ----- ----- ----- ----- ----- ----- <u>의견을 들어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생략)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u>다음 각 호의 사항이</u>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u>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	제68조(자금지원) ----- ----- -----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 략) <u><신 설></u> <u>17.</u>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u>17.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u> <u>18.</u> (현행 제17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임업직불제팀	
연 락 처	(042) 481 - 1241